

[별첨] 1. 정관 변경사항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 관 변 경 (안)		
개정 전 규정	개정 후 규정	비고
제 1조 (상호) 본 회사의 상호는 으뜸에셋투자회사(이)라 칭한다.	제 1조 (상호) 본 회사의 상호는 으뜸자산운용투자회사(이)라 한다. 영문으로는 Eutteum Asset Management Co.,Ltd라 표기한다.	상호 변경
<p>제2조 (목적)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한다) 제9조제28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(변경)</p> <p>1.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(변경)</p> <p>1. 상기 각호 이외에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업무(변경)</p> <p>&lt; 변경없는 부분 생략 &gt;</p>	<p>제2조 (목적)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"자본시장법"이라 한다) 제9조제28항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(변경)</p> <p>1.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(변경)</p> <p>1. 자본시장법 및 기타법령에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(변경)</p> <p>1. 부동산투자 및 개발에 관련된 대출의 중개, 주선 및 대리(추가)</p> <p>1.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용(추가)</p> <p>1. 기관투자자 및 일반법인의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(추가)</p> <p>&lt; 변경없는 부분 현행과 동일 &gt;</p>	목적 변경 추가
제 4조 (광고방법) 부산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국제신문에 게재한다.	제 4조 (광고방법) 부산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국제신문에 게재한다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ettasset.com)에 전자적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다.	광고 방법 변경